탄 원 서

사 건 번 호	2026노2154 (제1심 2026고합87)
사 건 명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피 고 인	정성욱 / 전 육군 대령
당 시 보 직	전 국군정보사령부 제100여단 제2사업단장
탄 원 인	성명: _____ 생년월일: _____
피고인과 관계	_____
탄원인 주소	_____
연 락 처	_____
제 출 처	서울고등법원 형사12-2부
법 원 주 소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1. 탄원의 취지

탄원인은 피고인 정성욱에 대한 항소심에서 범죄의 목적과 고의, 피고인의 실제 준비·지시·실행행위가 구체적 증거로 충분히 증명되었는지 다시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증명이 부족한 부분에는 무죄를, 유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책임에 비례한 형 감경과 선처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강압적 행위는 엄정히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건의 중대성과 별도로, 피고인이 무엇을 알았고 실제로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에 관한 개별적 증명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탄원의 이유

2-1. 1심 판단과 사실관계의 범위

2026년 8월 27일 1심은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작전의 준비, 요원 소집과 인력 운용 등 과정에 관여하였고 위법한 계획의 목적을 인식했다고 보아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전 준비와 현장 임무의 연결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의에서 전달된 내용, 부하들에게 내려간 구체적인 임무 지시, 물품의 확보 또는 준비 경위, 요원 소집 시점, 현장 출동 여부가 순차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른 지휘관이 알고 있던 계획을 피고인도 같은 범위로 이해했는지 여부를 기록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 주십시오.

2-2. 무죄 판단을 위한 핵심 증거 심리

준비물품의 종류나 인원의 소집이라는 외형적 사실과, 직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선관위의 기능을 강제로 마비시킨다는 목적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사이에는 별도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피고인이 물품 사용처와 임무의 강제적 성격을 당시 어느 정도 알았는지를 통화·문서·증인 진술의 상호 일치 여부로 검토해 주십시오.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내린 명령과 상급자의 지시를 전달한 행위, 회의 참석과 실행에 직접 관여한 행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1심이 인정한 고의가 피고인의 행위와 구체적으로 연결되는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는 증명이 있는지 재판부의 신중한 판단을 청합니다.

2-3. 직권남용의 범위와 구성요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피고인의 직책만으로 결론 낼 수 없고, 부하에게 어떤 의무 없는 행동을 시켰는지, 누가 실제로 지시와 실행을 담당했으며 선관위 직원의 어떤 권리행사가 방해되었는지를 특정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소집과 준비에 관한 지시를 그 이후 타인이 수행한 모든 현장 행위와 동일시하지 않고, 지시·승인·보고가 어느 시점에 누구 사이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구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범죄별 구성요건과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를 각각 엄격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4. 유죄 시 예비적 선처 요청

유죄 판단이 유지될 경우에도 피고인이 작전 계획의 작성이나 최종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 직접 동원한 인원과 실제 현장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실행된 부분과 실행되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지를 개별적 양형 사유로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 조직의 명령 관계가 위법행위에 대한 면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급 지시를 받은 경위, 위법성을 파악할 여건, 독자적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범위와 실제 결과를 함께 보아야 책임에 맞는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1심 징역 7년의 상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법이 허용하는 관대한 처분을 간절히 청합니다.

2-5. 항소심에서 추가로 확인해 주실 사항

물품의 구입이나 요원 소집을 지시한 시기와 목적, 실제 보관·배포·사용에 이르렀는지의 사정을 단계별로 검토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준비한 물품의 성격만으로 피고인이 강제적인 신병 확보나 선관위 기능 정지를 인식했다고 추정하기보다는 지시 내용과 보고 자료를 함께 보아 주십시오.

피고인에게 전달된 임무와 부하들이 실제로 실행한 행동을 명확히 구별하고, 관여한 기간과 독자적 판단의 여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의 입증과 구체적인 행위의 귀속을 정확히 가리는 일이 공정한 판단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3. 결어

재판부께서 피고인 정성욱에 관한 증거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시고, 국헌문란 목적과 중요임무의 고의적 수행이 증명되지 않은 부분에는 무죄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죄가 일부라도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와 책임의 정도에 맞춘 신중한 양형을 요청드립니다.

본 탄원은 확인되지 않은 선행이나 반성의 사정을 만들어 주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존중하면서도 엄격한 증명과 개인별 책임 원칙을 실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중히 이 글을 올립니다.

탄원인 : _____ (서명 또는 날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2-2부 귀중